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28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 박용진・황운하・전용기

김경만 • 이성만 • 남인순

양정숙 • 기동민 • 박재호

이학영 · 이은주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매도는 주가하락 예상 시 차입한 주식으로 매도 후 결제하고, 실제로 주가하락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법이며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음. 이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불한 시 주가하락 가속화,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, 외국인·기관 및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의심화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.

이런 상황에서 과거 현대상선,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공매도 물량이 증 가해 주가하락과 개인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사례도 있으며, 한미약품 사태와 같이 악재성 정보공시를 뒤늦게 하여 적시정보 제공이 이뤄지 지 않아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는 일도 벌어짐. 이런 악재사유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 한 차익실현에 악용될 소지가 큼.

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,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였고,주식의 등락이 예상될 수 있는 주요사건 발생 이후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함. 또한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와 처벌 조항도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(안 제180조제4항, 제180조의4,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(실제 차입공매도를 통하여 손익이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경우로서 신주의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
- 2.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각 사업연도 경 과 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익일까지
- 3.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
- 4.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의 공시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

제180조의3제1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을 "음수로서 그 절댓 값이 1만분의 1 이상"으로 한다.

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0조의4(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)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경우 신주의 가격이 산정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2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80조의3"을 각각 "제1 80조의4"로 한다.

제427조제1항 중 "제180조의3"을 "제180조의4"로 한다.

제435조제1항 중 "제180조의3"을 "제180조의4"로 한다.

제437조제2항 전단 중 "제180조의3"을 "제180조의4"로 한다.

제444조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제19호의4부터 제19호의6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19의2. 제18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한 자

19의3. 제180조의4를 위반하여 신주의 가격이 산정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를 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

제445조제48호 중 "제180조의3"을 "제180조의4"로 한다.

제449조제1항제39호 중 "제180조"를 "제1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0 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재 정 안  제180조(공매도의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 (실제 차입공매도를 통하여 손 익이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 중개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포 함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 획을 공시한 경우로서 신주 의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2.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 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각 사 업연도 경과 후부터 사업보 고서 제출 익일까지 3.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 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4.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

제180조의3(순보유잔고의 공시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 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<u>대</u>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,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<신 설>

제426조(보고 및 조사) ① 금융위 원회(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, 제176조, 제178조, 제178조의2, 제180조부터 <u>제180조의3</u>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

0일이 경과한 날까지
제180조의3(순보유잔고의 공시)
①
<u>은</u> <u>ㅁ</u>
수로서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
<u>이상</u>
 ⓒ (카리카 카스)
② (현행과 같음)
제180조의4(차입공매도 거래자의
유상증자 참여 제한) 주권상장
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
한 경우 신주의 가격이 산정되
기 전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
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유상
증자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
<u>다.</u>
제426조(보고 및 조사) ①

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혐의가 있는 자,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 감독원장에게 장부·서류, 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.

- ② (생략)
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, 제176조, 제178조, 제178조의2,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1. 2. (생략)
- ④ ~ ⑧ (생 략)

제427조(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제 압수·수색) ① 증권선물위원

② (현행과 같음)
③
제180조의4
1.•2. (현행과 같음)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세427조(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
압수·수색) ①

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, 제176조, 제178조, 제178조의2, 제180조부터 <u>제180조의3</u>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(이하 이조에서 "위반행위"라 한다)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조사공무원"이라 한다)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. ② ~ ⑥ (생략)

제435조(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)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, 그 밖에 이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경우에는 금융위원회(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, 제176조, 제178조, 제178조의2,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.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 신고 또는 제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35조(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
고자 보호) ①
<u>제180조의4</u>

보할 수 있다.

② ~ ⑧ (생 략)

제437조(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저의 정보교환 등) ① (생 략)

② 금융위원회(제172조부터 제 174조까지, 제176조, 제178조, 제178조의2, 제180조부터 제180 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・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. 이 경 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 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 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 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 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4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

·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세437조(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
의 정보교환 등) ① (현행과 같
<u>O</u> )
②
레180
조의4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데444조(벌칙)

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9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19의2. ~ 19의4. (생략)

20. ~ 29. (생략)

- 제44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~ 47. (생략)
  - 48.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 위원회(제172조부터 제174조 까지, 제176조, 제178조, 제17 8조의2, 제180조부터 제180조 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 회를 말한다)의 요구에 불용

<u>.</u>
1. ~ 19. (현행과 같음)
19의2. 제180조제4항을 위반하
여 차입공매도를 한 자
19의3. 제180조의4를 위반하여
신주의 가격이 산정되기 전
까지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
도를 하면서 유상증자에 참
<u> 여한 자</u>
<u>19의4.</u> ~ <u>19의6.</u> (현행 제19호
의2부터 제19호의4까지와 같
<u>수</u> )
20. ~ 29. (현행과 같음)
제445조(벌칙)
1. ~ 47. (현행과 같음)
48
제180조
의4

한 자

제4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~ 38. (생략)
- 39. <u>제180조</u>를 위반하여 상장증 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 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

39의2. ~ 49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449조(과태료) ①
<u>.</u>
1. ~ 38. (현행과 같음)
39. 제180조제1항부터 제3항까
<u> 지</u>
39의2. ~ 4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